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
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2. 6. 15
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2. 6. 8

· 회부일자 : 1992. 6. 8

다. 상정일자 : 제79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위원회 (1992. 6. 15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석 상 태)

가. 제안이유

· 은수사업체 증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은영기금의 일부를 적립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오던 충청북도은수사업체증사원교육시설설립및은영기금적립조례가 충청북도 은수연수원 개원 및 동 연수원 은영기금을 당해년도 과징금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금적립기간 (1984 ~ 1991)이 경과됨으로서 행정상 목적이 달성되어 본 조례 폐지 사유가 발생되었으며

· 현재 적립된 적립금 및 계속 발생하는 과징금의 효율적인 은영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용도특 확대 사용키 위한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 폐지 및 조례명 변경
 - 충청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폐지
 -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로 변경
- 과징금 적립기금의 사용범위 확대
 - 과징금 적립기금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 운영보조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
 - 벽지노선은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, 교통안전시설의 확충, 운수종사자의 교육 시설의 확충 및 운영,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허 회)

-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징수된 징수금에 대한 사용을 위하여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등 조례의 행정상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동도(4층)로 사용키 위하여 과징금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로 개정 করা 하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 없음 "

5. 특요지 : 별첨 수정안의 내용과 같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 (운영기금의 사용) -----	제10조 (운영기금의 사용) -----
1. -----	1. -----
2. -----	2. -----
3.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· 확충및 운영	3. 운수종사자의 교육운영
4. -----	4. -----

7. 심 사 결 과

- 개정안에 의한 수정동의안 7인중 6인 찬성으로 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정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 1부.
- 개정안 조문대비표 1부.
-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정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 1부.
- 수정안조문대비표 1부.